

# 『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11월 18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1월 26일

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하천과장 정태홍

나. 제안이유

-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이용 요금 및 할인제도를 개선하고 캠핑장 사용시간 및 구미캠핑장 사용수칙을 변경하여 쾌적한 레저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캠핑장 사용료 반환 기준 추가(안 제8조)
- 캠핑장 시설의 예약 기준 변경(안 제9조)
- 구미캠핑장 시설사용료 변경(안 별표 1)
- 구미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율 변경(안 별표 2)
- 구미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 변경(안 별표 3)
- 구미캠핑장 사용수칙 변경(안 별표 5)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 
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, 「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### 4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변 상 용

- 본 「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건은,
  - 구미캠핑장 시설의 이용 요금을 인상하고 반환기준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  - 타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 요금을 인상하여 노쇼(No-Show) 사례를 줄이고 숙박형 공공시설 이용취소 위약금을 경감시켜(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, '20.6.8)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쾌적한 레저 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 론 요 지 : 생 략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